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수신자 (110-043)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 행정감시센터 명광복

접수 일자	2012.06.07	접수 번호	1719436
-------	------------	-------	---------

청구 내용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백지신탁위원회가 각 연도별 주식소유 심사한 현황을 첨부 양식(참조문서)과 같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	--	--

공개 일시	2012.06.18 16 시	공개 장소	
-------	-----------------	-------	--

공개 내용			
-------	--	--	--

공개 방법	공개 형태		
	교부 방법		

납부 방법	수수료	우송료	감면액	합계
	0원	0원	0원	0원

수수료 산정내역		수수료 납입계좌 (입금시)	[]
----------	--	-------------------	-----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내용 및 사유	1. 청구인 귀하 및 귀 소속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2012.6.7. 제출하신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71943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2012.4.17.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671322)를 요청하셨고, 윤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거나 열람·복사를 허가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귀하는 2012.5.17. 이의신청(접수번호 1671322)을 제기하였고 2012.5.24. 정부공개심의회에서 동일한 이유로 기각결정(기각3, 인용1, 부분인용2, 불참1) 되었는바,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는 피청구인을 윤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정보내용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각 연도별 직무관련성 심사현황(첨부양식)으로 변경하여 청구하셨습니다. 3. 귀하께서는 심사위원회가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므로 심사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변경 지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공직자윤리법에서 정보의 공개나 비공개에 관하여 규정된 것은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같은 법 어디에도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결정·통보할 권한만 있을 뿐이며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심사위원회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도별 심사현황(직무관련성 있음, 없음 등)을 청구인이 제시한 첨부양식대로 행정부는 정부조직도에 의한 소구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별로 소구분을 하여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은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27조의7 제4항에서 심사위원회에도 이를 준용한 이유는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하겠습니까.
----------------------	--

	5.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이효식 사무관에게 전화(02-2100-3355)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2012 년 06 월 18 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

기안자	이효식	직위/직급	행정사무관
검토자	정연명	직위/직급	복무담당관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이경옥	직위/직급	부위원장
시행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71(2012.06.18)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세종로) 1207호		
전화	02-2100-3355 (팩스:)	전자우편	lhs92895@korea.kr